

보도 일시	2022. 11. 23.(수) 12:00		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지원과	책임자	서기관 권오수 (044-205-3985)
		담당자	사무관 채가람 (044-205-3987)

「지방공공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 개정안 확정

- 임직원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, 직장 내 성범죄·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정비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지방공공기관의 ‘윤리경영’을 강화한 「지방공공기관 인사·조직 지침*」 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4일(목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 - * 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기준,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

- 개정되는 「지방공공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등)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①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, 직무배제,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, ②성폭력, 채용비위,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*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(1/2 범위 내)토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.
 - *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함
- 또한, ③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 위원회를 구성(외부위원 과반수 참여) 하도록 하였다.

- (직장 내 성범죄, 스토킹범죄 등의 예방 및 보호) 직장 내 성범죄, 스토킹 범죄, 괴롭힘 등에 대하여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·절차를 마련 하도록 했다.
 -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, 가해자 조치,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.

- (법령 불일치사항 정비 등)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.
 -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, 징계·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을 보완하였다.

- **확정된 개정안**은 11월 24일(목)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되며,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.

- **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**은 “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·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 “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현 행	개 정 안
II. 임원의 인사	
③ 임원추천위원회 설치·구성	
<p>라. 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. ~ 5. (생략) 	<p>라. 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. ~ 5. (현행과 같음)
<p>아.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생략) ○ 사장(이사장)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○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(이사장)에게 추천 	<p>아.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행과 같음) ○ 사장(이사장), 비상임이사, 감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○ (현행과 같음)
⑤ 심사기준·방법 및 추천	
<p>자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 과정에서 제척·기피·회피할 수 있으며, 지방공사·공단의 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함 1. ~ 3. (생략) 	<p>자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 과정에서 제척·회피하여야 하고, 기피될 수 있으며, 지방공사·공단의 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함 1. ~ 3. (현행과 같음)
<p>⑦ 의원면직 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(특히,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(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)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)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	<p>〈삭제〉</p> <p>※ 임원과 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통합해 ‘IV. 투명한 윤리경영’으로 이동</p>

현 행	개 정 안
Ⅲ. 직원의 인사	
③ 채용시험의 공고	
가. 공고시기 ○ (생략) - (생략) -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, 전형별 합격배수,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<u>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</u> 을 거쳐야 함 (신설) ○ (생략)	가. 공고시기 ○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, 전형별 합격배수,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<u>자치단체와 협의</u> 를 거쳐야 함 ※ 기관이 인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 후 협의 ○ (현행과 같음)
⑧ 투명한 윤리경영	< 삭제 > ※ IV.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목차 변경
⑨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	⑧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(목차 순서 변경)
⑩ 비정규직 관리	⑨ 비정규직 관리 (목차 순서 변경)
IV. 투명한 윤리경영 (목차 신설)	
Ⅲ. 직원의 인사 ⑧ 투명한 윤리경영	IV. 투명한 윤리경영
가. 윤리경영 ○ (생략) ○ (생략)	① 윤리경영 ○ (현행과 같음) ○ (현행과 같음)
다. 징계양정 ○ 지방공사·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<u>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</u> 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- (생략) - (생략) - (생략) - (생략)	② 징계양정 등 ○ 지방공사·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<u>징계 및 직위해제,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보수규정,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</u> 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 align="center"><u>〈신 설〉</u></p>	<p>-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직 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</p>
<p>- (생 략)</p>	<p>- (현행과 같음)</p>
<p align="center"><u>〈목차 신설〉</u></p> <p>나. 의원면직 제한</p> <p>○ 지방공사·공단 <u>의 장</u>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<u>직원</u>(특히,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(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)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)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</p> <p>※ 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을 준용</p>	<p>③ 의원면직 제한 등</p> <p>가. 의원면직 제한</p> <p>○ <u>임면권자(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 공사공단의 장)</u>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<u>임직원</u>(특히,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(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)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)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</p> <p>※ 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을 준용</p>
<p align="center"><u>〈신 설〉</u></p>	<p>나. 퇴직금 제한</p> <p>○ 지방공사·공단의 임원이 성폭력, 채용비리,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* 퇴직금의 1/2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 마련</p> <p>*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, 제63조의7(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) 등</p> <p>※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원에 한함</p>
<p>라. 징계부가금</p> <p>○ (생 략)</p> <p>○ (생 략)</p>	<p>④ 징계부가금</p> <p>○ (현행과 같음)</p> <p>○ (현행과 같음)</p>
<p>마. 승진제한</p> <p>○ (생 략)</p>	<p>⑤ 승진제한</p> <p>○ (현행과 같음)</p>
<p>바. 표창 제한</p> <p>○ (생 략)</p>	<p>⑥ 표창 제한</p> <p>○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⑦ 직장 내 성범죄, 스토킹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사·공단 <u>의 장은 직장 내 성범죄, 스토킹범죄, 괴롭힘 등(이하 “성범죄 등”이라 한다)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으로 노력해야 함</u> ○ 지방공사·공단의 장은 <u>공직자윤리법, 성폭력방지법 및 노동 관계 법령(근로기준법 등) 등을 참고해 직장 내 성범죄 등에 대하여 상담신청·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·운영해야 함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,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-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(이하 “피해자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종류 및 근무지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- 가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처분, 승진 심사대상 제외,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○ 지방공사·공단의 장은 <u>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(개인 정보, 근무 관련 정보 등)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</u> ○ 지방공사·공단의 장은 <u>직장 내에서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함</u>
<p>〈신 설〉</p>	<p>⑧ 출자회사 등 재취업 심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사·공단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취업 시 <u>외부심사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·의결</u> - 취업심사 관련 세부 규정 등은 내부규정에 마련
<p>Ⅳ. 보수</p>	<p>Ⅴ. 보수</p>
<p>Ⅴ. 조직</p>	<p>Ⅵ. 조직</p>

현 행	개 정 안
II. 임원의 인사	
⑧ 의원면직 제한	< 삭제 > ※ IV.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목차 변경
III. 직원의 인사	
③ 채용시험의 공고	
가. 공고시기 ○ (생략) - (생략) -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, 전형별 합격배수,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<u>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</u> 을 거쳐야 함 (신설) ○ (생략)	가. 공고시기 ○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, 전형별 합격배수,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<u>자치단체와 협의</u> 를 거쳐야 함 ※ <u>기관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,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 후 협의</u> ○ (현행과 같음)
⑦ 징계	< 삭제 > ※ IV.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목차 변경
IV. 투명한 윤리경영 (목차 신설)	
	① 의원면직 제한 ○ <u>임면권자(자치단체 장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의 장)는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</u> 1.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.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,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② 징계 등 ○ <u>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</u> 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,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,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,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-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(이하 “피해자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종류 및 근무지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- 가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처분, 승진 심사 대상 제외,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○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성범죄 등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(개인정보, 근무 관련 정보 등)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○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함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5) 출자회사 등 재취업 심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자·출연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취업 시 외부심사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·의결 - 취업심사 관련 세부 규정 등은 내부규정에 마련
<p>IV. 조직과 정원 운영</p>	<p>V. 조직과 정원 운영</p>